

주택임대관리업자 현황 신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2일
신고인	성명 (대표자)	한글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/외국인등록번호)
		한자	
	상호 또는 명칭		사업자등록번호
	영업소 소재지		(전화번호:)

신고 내용									
구분	현황								
1. 등록기준 사항	자본금(원)		전문인력(명)		사무실 소재지				
2. 관리주택 현황									
소재지	호수·세대수	임대인 성명	위·수탁 계약기간	영업형태 (자기/위탁)	보증보험 가입여부 (자기)	수수료율 (위탁)	임대료 (자기)	전대차계약(자기)	
								해당 분기 전대차계약 체결 여부	계약기간, 전대료, 전대보증금
총 관리 호수·세대수									

특별자치시장
특별자치도지사 귀하
시장·군수·구청장

첨부서류	1. 자본금 증명서류 2. 전문인력 확보 증명서류 3. 사무실 확보 증명서류 4. 각 호·세대별 위·수탁계약서 5. 각 호·세대별 보증보험가입증서(자기관리형만 해당합니다) 6. 각 호·세대별 전대차계약서(자기관리형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유의사항
1.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이후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현황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67조제3항제4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.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15조에 따라 같은 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2. 관리주택 현황 중 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습니다. 이 경우 첨부서류란 제6호 각 호·세대별 전대차계약서도 첨부하지 않습니다.

처리절차
신고서 작성 → 제출 → 확인·검토 → 보고
신고인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, 시·군·자치구 국토교통부장관